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65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추가하며, 공익적 제공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며,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으로 함(안 제6조).
- 공익적 제공기관의 개념과 운영형태가 불분명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 보장하고,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2조).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이”를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 위원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소위원회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가사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p> <p>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p>	<p>제2조(정의) ----- -----.</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기본계획) ① ----- ----- -----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4.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p> <p>1. 조직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p> <p>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p>	<p>제11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제정안	수정안
<p><u>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u></p> <p><u>2. 조직목적이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질 제고,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증진,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u></p> <p><u>② 시장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③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 ----- ----- ----- ----- 설치할 수 있다.</p> <p>1. ~ 4. (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소위원회가 ----- ----- -----.</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가사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사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개발
 2.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가사노동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4.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가사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 보호위원회에 가사노동자 관련 소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협력체계)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